



2023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2023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 장애인일자리사업	4
• 공통사항	6
• 기타 안내사항	9
• 일반형 일자리	10
• 복지 일자리	12
• 특화형 일자리	14



장애인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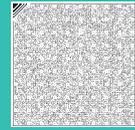
2.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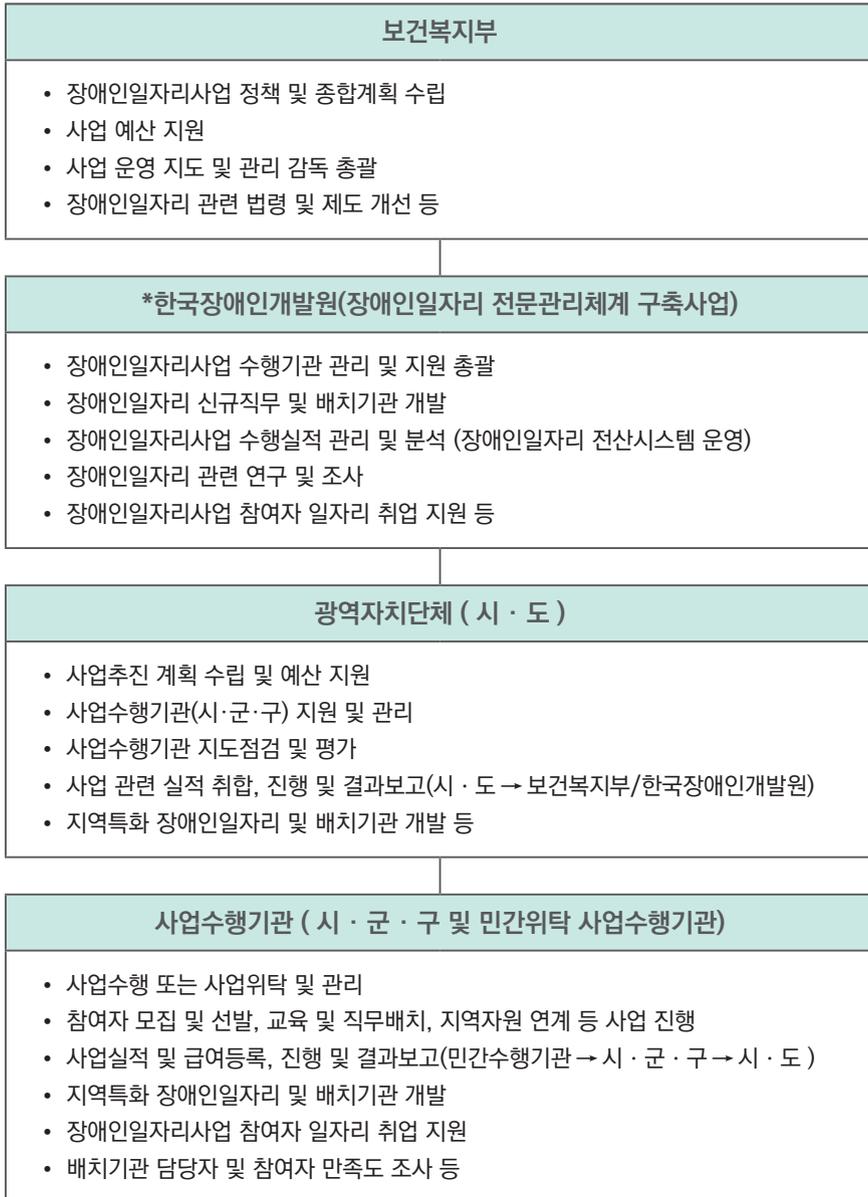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직업재활 시설지원 요원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사업기간: 12개월(1월~12월)

구분		근로시간		급여(월)	지원인원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주 5일)	1~11월	주 5일(40시간)	2,010,580원	7,590명
		12월	주 37.5시간	1,885,520원	
	시간제	1~11월	주 20시간	1,005,290원	3,925명
		12월	주 19시간	953,34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38,720원	15,794명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주5일)	1~11월	주 5일(25시간)	1,260,220원	1,160명
		12월	주 5일(23.5시간)	1,183,260원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주5일)	1~11월	주 5일(25시간)	1,260,220원	1,077명
		12월	주 5일(23.5시간)	1,183,260원	
총 합계					29,546명



3.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공통사항

1.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가능)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만 해당)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2.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참여자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 ①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
 - Q-Net(<http://www.q-net.or.kr>)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
- ② 온라인 교육 과정
 -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수료증 증빙 필수)
 - ※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내로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를 추가 증빙하여야 함.
- ③ 시·도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한 교육과정
 - 시·도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주체 장이 발행한 교육 참여 확인서 발급 가능

직업훈련 인정 교육(①, ②, ③) 확인서류 제출 안내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해 확인서류(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서식33-1], 확인서[서식33-2], 수료증)는 매월 사업수행기관의 급여지급일 이전 제출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 최종 마감일은 2023.12.15. 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인정범위

사업 유형	근로시간으로 인정 시간
일반형(전일제)	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일반형(시간제)	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복지형(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 ※ 총 인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시간 포함 가능함
- ※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예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등)

4. 참여 중단 조치

아래의 사유로 인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 ※ 단,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단사항 중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를 제한 함.
- (참여제한 예외대상) 즉시 참여 중단 사항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음.

1) 즉시 참여 중단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참여 중단 조치 가능

[즉시 참여 중단 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 단,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이며,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공통사항

2)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 조치 가능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 폭력 등의 사유발생시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함.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 발생 시
 - (예시: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등)
 - ※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3)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조치 가능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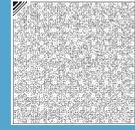
[참여 중단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시정조치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 면담	면담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경고조치	시정조치 후에도 반복될 경우 업무경고장을 통한 경고 조치	업무경고장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참여자에게 주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
징계위원회	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실시	해당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담당자 등 참석 ※ 참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참여중단 조치	<u>징계위원회 결과 참여 중단 결정된 경우</u> , 참여중단예고통지서를 통한 참여 중단 조치	참여중단예고통지서는 참여 중단일 30일전에 참여자에게 전달해야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기타안내사항



1.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 19조(육아휴직), 제19조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2. 참여자 선발 가점대상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선발 가점: 5점
-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에 대한 가점 제공
 - 선발 가점: 5점
 - 수상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 증빙서류: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선발 가점: 수행기관별 점수 상이
 -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 선발 가점: 10점 또는 5점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선발 가점: 10점



일반형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 배치기관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시·군·구청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민간 위탁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영리 복지시설(기관) 등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생산활동 직무* *하청 입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2. 교육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 주체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8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전일제 일자리 1월~11월 주 40시간 / 12월 주 37.5시간
시간제 일자리 1월~11월 주 20시간 / 12월 주 19시간

◆ 휴가를 사용할 경우 :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휴가: 1년 계약자 : 1월 1일~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익일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발생)
1년 미만 계약자 : 1월 2일 이후~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익일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한달 내내 휴업 시 미발생

○ 특별휴가

구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5일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입양확인서
출산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증명서

※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병가(유급휴가)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병가인정범위	10일					
1일 인정 누계시간	8시간	4시간	-		5시간	

※ 누계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병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인정)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면접)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단,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 국가, 지자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공식체육대회에 대해 대회주최기관을 통해 공식적(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가능

4. 보수·보험

보수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1~11월	2,010,580원	1~11월	1,005,290원
	12월	1,885,520원	12월	953,340원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복지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무명	직무내용 및 배치기관
사무, 도서관사서, 우편물분류, 환경정리 등 (38개 직무)	직무에 따라 다름

2. 교육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 주체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5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월 56시간

○ 특별휴가

	구 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 인	20일	입양확인서
출 산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증명서

※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병가(유급휴가)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병가인정범위	10일					
1일 인정 누계시간	8시간	4시간	-		5시간	

※ 누계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병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인정)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면접)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 단,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 ※ 국가, 지자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공식체육대회에 대해 대회주최기관을 통해 공식적(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가능

4. 보수·보험

○ 보수: 538,720원(고용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보험가입: 고용·산재보험 가입

※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거)



특화형 일자리

1.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사업유형	직무내용	주요 배치기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 등

2. 교육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시행주체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교육 시간	5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구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필수)
시행주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1-2주 이내(25시간-50시간) *단, 2021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의 경우 5-10시간 교육 가능	1-2일 이내 (5시간-10시간)
교육 시기	사업개시 후 1분기 이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배치기관 현장 오리엔테이션 등	심화요양교육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시간: 1일 5시간 / 주 5일(주 25시간)

◆ 휴가를 사용할 경우 :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휴가: 1년 계약자 : 1월 1일~12월 31일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익일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발생)
1년 미만 계약자 : 1월 2일 이후~12월 31일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익일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 한달 내내 휴업 시 미발생

○ 특별휴가

구 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 인	20일	입양확인서
출 산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증명서

※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병가(유급휴가)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병가인정범위	10일					
1일 인정 누계시간	8시간	4시간	-		5시간	

※ 누계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병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인정)



특화형 일자리



○ 공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면접)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사유(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단,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
 ※ 국가, 지자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공식체육대회에 대해 대회주최기관을 통해 공식적(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가능

4. 보수·보험

구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수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11월	1,260,220원	1~11월
	12월	1,183,260원	12월	1,183,260원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